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 제고 방안¹⁾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수

I. 서론

모든 시·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있어 규칙 또는 인간관계, 학업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의 경험을 가져 적응유연성을 키우고 자신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위탁교육기관의 운영은 어떤지, 문제점과 애로사항,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없었다.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지정기준을 정해 심사하여 기관을 지정하고 있으나 그 기관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아 대안교육 기회를 누리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교원들이 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의 유형, 지정 기준, 평가 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모든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자와 관계자가 위탁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증 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등의 지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제도, 유형과 발굴 및 인증 방법 등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등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1) 본고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년 고유과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를 수정·보완한 것임.

II.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심사기준 및 운영 현황

1. 지정심사기준

선행연구와 교육청의 지정심사기준에서 제시된 지표 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는 규칙 수립으로, 기관은 기관운영계획이나 운영지침 등 기관 자체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는 교육 활동으로, 기관은 체계적으로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는 시설 운영으로, 해당 기관의 공간이 학습에 적합하고 안전해야 한다. 넷째는 인력 운영으로, 기관 인력들은 교육에 적합한 관련자격증을 소지하고 성범죄경력이 없으며, 교직원연수를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는 학생 관리로, 기관에 출석하는 학생들의 출결, 학교폭력, 상담 등 학생지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은 예산 관리로, 기관의 재정운영이 투명하고 수익자부담경비는 적정해야 한다.

2. 운영 현황

한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8년 4월 기준 총 229개 기관에서 3,558명을 위탁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인원까지 고려하면 2만 여명을 넘는 수치이다. 기관유형으로는 평생교육시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직업전문학원이 많았다. 위탁기간은 장기가 145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탁교육기관의 중점 프로그램은 진로탐색이 144개 기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통학일수는 5일이 대부분이지만 오전이나 오후만 운영하는 기관도 있었다. 통학유형은 대부분 통학이며 기숙은 23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을 보면, 상근직원은 1,367명, 비상근직원은 1,640명이고 이 중에서 교원자격증 소지자는 1,106명으로서 기관당 평균 4.82명의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격증 과정은 바리스타 과정 등 106개 기관이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II. 인증평가에 관한 의견 조사 결과

담당 장학사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최저인증기준, 인증평가주체, 인증평가공개, 재정확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 최저 인증 기준이 필요하다.
- 인증평가 주체가 어디(혹은 누가)인가에 대한 고려(평가 주체가 제 3기관일 경우의 위탁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음)가 필요하다.
- 인증평가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연구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인증평가의 공개를 전제하고 있다면 위탁교육기관 인증평가 공개는 교육청에 맡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시·도별 지원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평가의 최저선이 다를 경우 위탁교육기관 평가 공개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불만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 평가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 위탁교육기관과 관련 재정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기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 인증지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증지표 제시가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
- 지역에 따라 위탁교육기관 선정의 어려움으로 학원 등과 같은 기관을 선정할 경우, 제시한 기준(공통지표)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2회에 걸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구진에서 개발한 평가인증지표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되었다. 이 외에 2차에 나누어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대안교육 위탁교육운영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첫째, 특정 종교의 가치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둘째, 예술, 독서, 진로, 창업, 치유, 아웃도어 등등 다양하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평가 시 보통교과보다는 대안교육 운영상황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넷째로, 외부 전문 기관(병원, 보건소, 경찰, 청소년 관련 기관, 법원 등)과의 연계를 통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다섯째로, 교사 소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증평가에 앞서 연수 등을 통한 대안교육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IV. 외국의 현황

외국 사례로서 영국의 Pupil Referral Unit(PRU)과 미국 플로리다주의 Second Chance School, Charter School을 살펴보았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위탁교육기관을 공립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잉글랜드의 Pupil Referral Unit(PRU)과 미국 플로리다주의 Second Chance School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잉글랜드의 PRU와 미국의 Second Chance School은 학교와의 협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이외에도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는데 잉글랜드의 PRU에서는 'Behaviour & Learning Support Service(B&LSS)'로 위기학생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는 '위기학생 조기발견 시스템(early warning system)'을 통해 위기학생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에 비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잉글랜드와 미국에서 모두 위기 학생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생활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부진에 대한 대응을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학습지원 서비스는 개별 학생을 대상을 맞춤형 지원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학교에서 수업의 진도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의식 수업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학습 지원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Second Chance School의 경우에는 수업마다 세션을 나누어서 한 세션에서는 개인별 학습 속도와 학습 수준에 맞도록 컴퓨터를 활용한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른 세션에서는 팀별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습동기와 자존감의 저하, 우울증, 회복탄력성의 저하 등 다양한 정신적 문제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잉글랜드의 PRU와 미국의 Second Chance School에서는 학습지원 못 지 않게 정서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잉글랜드의 PRU에서는 교사 이외에 정신보건사, 치료상담사, 가족체계치료사, 트레이니 교육심리치료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들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Second Chance School에서도 개인별 상담 및 학부모 교육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잉글랜드의 PRU와 미국의 Second Chance School에서 모두 사회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위기 학생들이 개인적 고립감에서 벗어나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는 다양한 스포츠 활동, 클럽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 자치 활동도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잉글랜드의 PRU와 미국의 Second Chance School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위탁교육기관 운영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검토 하는 기회를 삼는 것이 중요하겠다. 또한 평가를 통해 인증을 하는 경우에도 평가 지표에 이러한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 사례 분석 결과, 위탁교육이라도 학교와의 협업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위기학생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교사 외에도 정신보건사 등 정신건강 서비스 담당자들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V. 평가인증체제 및 지표 개발 결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평가인증체제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평가인증의 목적은 위탁교육을 행하고자 하는 교원·학생·학부모에 대한 위탁교육기관정보 제공을 통해 합리적 선택 유도, 교육청의 재정이 지원되는 만큼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 우수 사례의 프로그램 보급, 전파, 자체평가를 통한 운영 개선에 있다. 평가결과는 교육청에서 지정심사 시 심사기준으로 활용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사례는 사회적으로 홍보 및 확산하며, 정부지원확대를 요청한다. 반면, 평가결과 미흡한 사례는 컨설팅 등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 시행하도록 한다.

평가주기는 3년간 인증 유효한 것으로 한다. 또한 평가시행의 원칙으로서 위탁교육기관에서 행정적 잡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자체평가편람의 사전배포로 자발적 진단과 효율적 진단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대안교육시설의 특성에 맞게 정량지표는 최소화하고, 정성지표에 따라 진단위원들의 현장 방문에 의한 진단이 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평가팀은 대안교육 연구자, 대안학교 관계자 등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6시간의 연수(위탁교육 및 대안교육시설 현황 소개, 지표 설명 등) 후 파견하도록 한다.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당장 지도하려 하기 보다는 추후 컨설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우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세로 임하도록 연수한다.

평가절차는 평가 안내 → 자체진단편람 배포 → 자체평가보고서 수합 → 평가위원 연수 → 위탁교육기관과 일정협의 후 현장방문 → 만족도 조사(학생은 방문 시 설문(일부 전화), 학부모는 전화 설문) → 평가결과 보고서 수합, 제출의 순으로 이뤄진다.

평가지표는 3개 영역, 13개 세부영역 및 1개 교육청 자율영역으로 하며, 20개 평가지표와 3개 만족도 지표, 1개 자율지표로 구성한다.

성과평가는 사실상 평가인증과정에 포함된 절차로 볼 수 있으며,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결과가 핵심적인 요소이고, 이외에 위탁교육기관의 운영결과보고서 또는 성과평가보고서를 참고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제시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평가인증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1]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평가인증지표

영역	세부영역	인증지표
1. 교육목표	1.1. 교육목표 및 계획	1.1.1. 교육목표나 계획 수립시 요구조사나 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1.1.2.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가?
2.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2.1. 교육과정 편성 · 운영	2.1.1.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이 교육계획과 연계되어 있는가?
		2.1.2. 일반학교와는 차별화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가?
		2.1.3. 학생들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가?
	2.2. 교수학습	2.2.1. 학생들이 진학이나 취업,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하는가?
		2.2.2. 학생들의 흥미나 특성,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여 그 의견을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하는가?
	2.3. 교수학습 지원	2.3.1. 교사들에게 자기 성장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자체연수, 워크숍, 세미나 참여 등)를 제공하는가?
	2.4. 학생지도	2.4.1.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경우 전문적 기관과 연계하여 지도하는가?
		2.4.2.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 · 학부모와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가?
		2.4.3. 원적교 교사(담임 등)와 위탁학생에 대한 주기적인 정보교환을 하는가?
		2.4.4. 출결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가?
3. 교육결과	3.1. 교육의 성과	3.1.1.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3.1.2. 발표회, 전시회 등 배움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가?
	3.2.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3.2.1. 대인관계, 의사소통, 공감능력, 경험적 사고력, 일상자기관리, 적응유연성, 문제해결력, 학업성취도 등 학생변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 기록하는가?
		3.2.2. 평가결과를 학생지도에 활용하는가?
4. 조직운영	4.1. 시설과 재정	4.1.1. 교육시설과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는가?
		4.1.2. 교육청에서 지원된 재정을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집행하는가?
	4.2. 인적 구성	4.2.1.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는가?
	4.3. 지역사회와의 연계	4.3.1. 지역사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가?
5. 만족도	5.1. 학생	5.1.1. 학생들은 위탁교육기관을 다니는 것에 대해 만족하는가?
	5.2. 학부모	5.2.1.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변화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만족하는가?
	5.3. 교사	5.3.1. 교사들은 교육의 보람을 느끼고 있는가?
6. 자율지표	6.1. 자율지표	〈교육청별 자율적 편성〉

VI. 쟁점 및 정책 제언

1. 위탁교육기관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 신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서는 학생·기관·학교 평가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위탁교육기관 평가인증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초·중등교육법」에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문신설안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⑨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위탁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위탁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기관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 ⑩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⑪ 제9항의 인정기관 지정과 평가 또는 인증 및 제10항의 인증 결과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2. 학업중단 위기학생에 대한 위탁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

위탁교육의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2항인데, 법 제28조 제1항에서 대상을 '학업중단 위기학생' 즉,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이 아니라 '학업 중단 학생'으로만 정하고 있어 입법적 흠결로 보인다. 학업 중단 학생은 의무교육기관의 경우 정원외 관리된 학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업 중단 학생은 결과적으로 제적된 학생을 의미한다.

교육부자료나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에서도 '학업 중단 학생'은 이미 학교를 그만 둔, 사실상 제적된 학생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위탁교육은 사실상 학업 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개정이 필요하다.

[표2]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개정 방안

현행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학업 중단 학생 <신설>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생략> 2. 학업 중단 학생 3.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

3. 평가인증 결과활용 및 정보제공체제 구축

평가인증이 실행될 경우 그 결과를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제공하여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정보제공은 결과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질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쉽고 편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위탁교육기관 평가인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학교특성, 학생구성, 교육과정, 교직원, 운영규칙, 수익자부담경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원적교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평가인증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명확해야 운영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즉 그 결과를 단순히 수요자들인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그칠지 아니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결과에 따른 컨설팅을 통해 질 개선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 물론 이 세 가지의 활용목적은 모두 추구할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평가인증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위탁교육기관에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 차원에서 정할 사항이다. 지역의 상황과 수요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평가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기관 인증평가 공개를 교육청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지역이 생길 수 있고, 그 지역의 수요자들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지 못한 채로 기관을 선택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결과공개는 모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위에서 말한 것처럼 평가인증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교육 대상인 학생들을 위탁하는 것이므로 지정을 해서 학생을 위탁하고자 한다면 위탁교육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될 수도 있다.

시·도별 지원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평가의 최저선이 다를 경우 위탁교육기관 평가 공개로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불만이 형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위탁교육기관과 관련 재정이 충분히,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증기준,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최소한의 공통적 기준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탁교육기관에 학생을 위탁하는 것은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추가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과 같은데 길잡이 교사 1~2명에 대한 최저임금수준의 인건비와 실제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을 뿐이어서 평가인증을 한다고 하면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으므로 먼저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가면서 평가인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재정지원이 자칫 위탁교육기관의 자산증식의 결과를 가져올 목적으로 오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원된 재정이 시설개선에만 활용된다면 결과적으로 위탁교육기관의 물리적 자산 증식의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재정지원 확대는 위에서 말한 기본적 인건비와 함께 학생 교육에 투입되는 운영비에 집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인증평가 주체와 책임

인증평가 주체가 누가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평가 주체가 제 3기관일 경우에 위탁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교육청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지정심사기준을 정하여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한 것인데 제 3의 기관에서 인증평가를 하게 되면 기준에 못미치는 결과를 발생될 수도 있다. 또한 그러한 결과가 단순히 위탁교육기관의 운영상의 책임이 아니라 교육청의 충분한 지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교육청별로 지정심사기준이 다르고 운영방침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탁교육기관의 물리적 시설이나 교육 프로그램 상의 특성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다. 그에 따라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어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평가인증을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역상황만 고려하다보면 일반적인 대안교육적 요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교육이 진행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평가주체는 제3의 기관에서 추진하되 최대한 지역상황을 고려하고, 특히 자율지표에 교육청별 지표를 설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6. 위탁교육 특화프로그램 개발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면서 다양한 위탁대안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그들의 학교생활 적응유연성을 높여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다시 원적교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위탁학생들을 끌어안고자 하는 눈물겨운 시도들이 여기저기서 목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이 개별 위탁교육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관심분야를 파악하고 천편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맞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정규교과에 대한 개발과정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진행해 왔지만 이러한 대안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논의나 노력은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다.

이러한 대안적 교육과정이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결국은 위탁교육기관의 길잡이 교사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데 그 질을 보증하기 힘들다. 그러한 상황에서 평가인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명실상부 '대안교육'이라고 할만한 프로그램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는 단지 정규교과 뿐만 아니라 대안적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러한 위탁교육기관에 보급한 후에 그것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인증을 하는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7. 새로운 위탁교육수요 대처

현재 추세를 보면 일반적 학업중단위기학생 뿐만 아니라 다문화, 탈북청소년이 늘고 있다. 심지어 중도입국청소년들이 늘고 있어 이중언어교육에 대한 수요까지 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탁교육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탈북학생도 언젠가 우리나라에 정착해야 하므로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탈북학생은 언어적, 문화적, 교육적 측면에서 저성취를 보이면서 적응상의 문제를 보이고 결국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탈북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에 10.8%를 기록했지만 그 이후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에는 2.5%로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일반학생의 학업중단율 1.4%에 비해 더 높은 상태이다. 즉 탈북학생을 무작정 일반학교에 보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탁교육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위탁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탈북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들, 예컨대 한겨레중고등학교와 같은 탈북학생 특성화학교나 여명학교, 하늘꿈학교, 드림학교와 같은 탈북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의한 각종학교로서의 법정 대안학교)들의 경우를 보면 북한출생 탈북학생보다 제3국 출생후 남한 입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탈북자 자녀 중 중도입국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현재 탈북학생으로 분류되어 정책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 예컨대 중국출생자의 경우에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중도입국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른다. 그런데 바로 일반학교에 다니라는 것은 교육의 개별화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중언어교육 등을 밑바탕으로 남한의 교육체제에 적응할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을 키워준 후에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을 행할 위탁교육기관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성기, 안병천(2011). '탈북청소년 위탁교육 시행 및 관리 방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김성기, 윤상석(2012). 탈북학생 위탁교육 컨설팅 방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김성기, 이덕난, 안병천(2011).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운영진단 및 컨설팅 방안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 김성기, 정제영(2018).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인증기준 및 성과평가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기, 조동섭, 김수영, 전제상, 김병찬(2012).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경상북도교육청 정책연구보고서.
- 김성기·조동섭·전제상(2009).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 분석'. 부산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보고서.
- 도시속작은학교(2018). 내부자료.
- 송기창(2007). 학교선택제의 이상과 실상: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을 위한 미국의 학교선택제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5(3).
- 윤철경(2017). 위기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학업중단예방체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두 가지 방식을 참고하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해외동향 자료.
- 윤철경, 김성기(2012).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제영·신인수(2009). 미국 차터스쿨의 학업성취도에 관한 메타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7(1), 101-122.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5). 위기청소년 발견·연계·지원 강화를 위한 CYS-Net 필수연계기관 안내서.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District of Columbia Public Charter School Board (2017). 2017-18 Charter Review Guidelines.
-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 563-575.



교육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대인교육지원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6층
학업중단예방 및 대인교육지원센터
전화 044-415-2153 팩스 044-415-2349 www.gotoschool.re.kr